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76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 강훈식 · 김 윤 · 김병기

김남근 • 강준현 • 문진석

김교흥 · 김승원 · 박상혁

윤준병·김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704억원, 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고령금융소비자"란 60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를 금융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 및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고령금융소비자의 대리인 지정)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착취 의심거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지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고령금융소비자의 직계존・비속
 - 2. 금융상품의 공동소유자
 - 3. 금융상품의 수익자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장제3절의 제목 중 "손해배상책임"을 "거래지연조치 및 손해배상책임"으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거래지연조치)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고령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지연조치"라 한다)를 할수 있다.
 -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 위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 3.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위를 부

당하게 이용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유용하려는 행위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령자와 금융감독원에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한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 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통지·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43조의3(대리인에 대한 통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 전에 제23조의2에 따른 대리인에게 해당 금융거래 요청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리인이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는 경우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보고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금융착취(고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또는 무단으로 취득·사용하거나 후견인 지위 등 법적 지

- 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그 재산을 통제·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금융착취가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보고한 조사의 결과 와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 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취 폐 | -11 -71 A1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
| <u> <신 설></u> | 11. "고령금융소비자"란 60세 | | |
| |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 | | |
| | <u>한다.</u> | | |
|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 |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 | | |
| 리책임) ①・② (생 략) | 리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 | |
| <u><신 설></u>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 | | |
| | 금융소비자를 금융착취로부터 | | |
| |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 | |
|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 | |
| |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 | |
| | 할 기준ㆍ절차 및 임직원 교육 | | |
| |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u><신 설></u> | 제23조의2(고령금융소비자의 대 | | |
| | 리인 지정) ① 금융상품판매업 | | |
| | 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 | | |
| | <u>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u> | | |
| |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 | | |
| | 착취 의심거래에 대비하기 위 | | |
| | 하여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신 설>

자가 통지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 1. 고령금융소비자의 직계존· 비속
- 2. 금융상품의 공동소유자
- 3. 금융상품의 수익자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렁으로 정하는 자
-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u>거래지연조치 및 손해배</u> 상책임 등

제43조의2(거래지연조치) ①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 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고령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지연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

 사수신행위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 3.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 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유용하려는 행위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령자와 금융감독 원에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사 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 거래의 목적을 확인한 결과 해 당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 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 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연 조치에 관한 통지·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대리인에 대한 통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
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 전에 제23조의2
에 따른 대리인에게 해당 금융
거래 요청사실을 통보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대리인이 제43
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는

<신 설>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의2(고령금융소비자 금융
피해 보고 등) ①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금융착취(고령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또
는 무단으로 취득・사용하거나
후견인 지위 등 법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그 재산을
통제・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금융 착취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 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 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 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보고한 조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 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 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의 임직원을 포함한 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 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 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